

## 1. 防災關聯法規 改正

### 가. 建築法의 改正

法律 제 3558 號로 改正된 建築法이 1982 年 4 月 3 日 公布되어 防災研究部에서는 改正 法律의 사본을 본지부에 送付한바 있으며 그 중 安全點檢 實務와 밀접한 關聯이 있는 부분을 翻譯하여 轉載한다. 특히 建築法 제 2 조 제 3 호의 「特殊建築物」의 用語에 대한 定義가 삭제되었으나 同法 施行令에서 「特殊建築物」이란 用語가 併변히 引用되고 있으므로 建築法 施行令의 改正, 公布時 까지 點檢과 關聯하여 特殊建築物이란 用語를 사용하여도 地上이 없을듯 하다.

改正建築法 新・舊 對比表

조 항	舊	新
제 2 조 제 7 호	“主要構造部”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重要部分을 이루는 벽, 기둥, 바닥, 들 보, 지붕, 主階段, 共他 이와 類似한 것 을 말한다.	“主要構造部”라 함은 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. 다만 間壁, 셋기둥, 최하층바닥, 작은보, 遮陽, 屋外 階段,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 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 외한다.
제 23 조 의 2	(特殊建築物等의 内裝) 제 2 조 제 3 호 의 규정에 의한 特殊建築物(火葬場, 屠 殺場, 塵埃 및 汚物處理場은 제외한다) 및 5 층 이상인 건축물의 屋內 部分의 内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防火上 地上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	(建築物의 内裝) 5 층 이상인 建築物, 醫療施設, 宿泊施設, 販賣施設, 觀覽集 會施設, 慶典施設, 共同住宅등 大統領 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内裝 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防 火上 地上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나.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(내무부 고시 제 4 호)

現 消防法 施行令 제 26 조의 規程에 의하여 國家檢定을 받아야 할 消防用機械器具중 泡沫消火器  
와 消火藥劑를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는 除外하게 되어 있으나 할로겐화물에 의한 消火藥劑의 開  
發이 눈부시게 進步하고 있으며 그 消火性能이 타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할로겐화물을 藥劑  
로 한 消火器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豫想된다.

이에 內務部에서는 할로겐화물을 藥劑로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에 대한 製造 및 性能에 대한 最  
小限의 基準을 製定한 것으로 料된다.

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은 全文 6 條(既送付한 規程사본 참조)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조에서 「간

이하론소화용구는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스프레이式으로 방사하는 기구로서 檢定規則에서 定하는 1 단위 以上의 消火器를 除外한 소화약제의 重量이 700 g 미만인 것을 말한다」로 定義되어 있다.

제 2 조에서는 消火用具의 容器에 대한 規定이 나와있고 제 3 조, 4 조에는 消火用具의 性能試驗과 방사시험, 제 5 조에는 消火藥劑에 대한 規制, 제 6 조에는 消火用具에 表示해야 할 事項등이 나와있다.

#### 다. 改正「안전점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업무규정」

——內務部 訓令 제 705 號(82. 2. 11)——

1981年 4月 4日 消防法 改正에 의해 同法 제 6 조 消防검사에 대한 特例가 삭제되어 당 協會의 安全點檢이 消防検査에 代身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内務部 訓令 제 610 號의 제 4 조 「소방 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點檢의 범위」에 대한 규정이 따라서 삭제되어 훈령 제 705 號로서 公布(82. 2. 11)되었으며 제 4 조 以外의 다른 부분은 變動이 없다.

다음은 改正된 訓令의 全文이다.

제 1 조[목적] 이 규정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의한 한국 화재 보험협회(이하 “화보”라 한다)의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안전점검결과처리의 신속, 적정 을 기함으로서 화재예방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[적용대상] 이 규정은 화보 및 화보의 안전점검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방관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된다.

제 3 조[안전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작성] 화보는 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승인 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4 조[삭 제]

제 5 조[안전점검의 계획수립 및 통보] ① 화보는 매년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12월 15 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화보가 보험계약갱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반기별로 반기개시 1개월전에 대상별 · 월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계획서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방검사로 갈 음할 수 있도록 대상별 · 월별 소방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 6 조[안전점검의 실시] ① 화보의 안전점검은 방화안전관계법령(소방법 · 전기사업법 · 건축법 ·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· 열관리법 등) 및 점검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점검 대상물의 관계자(점검대상물의 소유자 · 관리자 · 점유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안전점검 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화보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1월이내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화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소방관서의 장과 화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7 조[안전점검결과의 통보] ① 화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, 방화안전관계법령상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 1호서식